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올림터) 운영규정

2024년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올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공연장 시설을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과 교육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장의 기능) 공연장은 문화공간 운영을 통해 공연, 행사, 교육, 포럼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통해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선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다.

제3조(공연장의 범위) 공연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올림터'
- ② 2층 공연장 내 기타 부속 공간 및 부대설비

제2장 공연장 대관

제4조(대관의 정의) 대관이라 함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공연장 및 부속 공간, 부대설비 등을 기념관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공연장의 범위는 제3조의 '공연장의 범위'와 같다.

제6조(대관) ①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유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기념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노동'을 주제로 한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기념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교육, 학술포럼, 국가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회의 등 행사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대관의 신청 및 승인) ① 공연장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

태일 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사용시간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공연) 물품, 기자재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자는 기념관이 요구하는 준비(셋업, 리허설), 철수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념관은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1(공연장 무대장비 사용 전 사전협의) 공연장 대관을 받은 후 공연장 내 무대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무대장비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제8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9조(대관내용의 변경) 관장은 기념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대관 신청의 제한, 취소 등)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념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2.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3.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4.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3.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로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대관자 의무 및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공연장 사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대관자는 대관 진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화재예방법, 전기안전관리법, 어린이안전법 등을 준수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연장 무대장비 사용 시 사전에 무대장비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3. 대관자는 공연장 대관이 마감되면 사용했던 모든 장비의 셋팅값, 조명 각도, 의자 등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대관자는 사용한 모든 장비의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전원을 끄지 않은 채 기념관 직원에게 사용한 모든 장비에 대한 정상 작동 확인 및 퇴실 승인을 받은 후 퇴실하여야 한다.
5. 단, 기자재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을 경우 대관단체는 기념관에 재방문하여 기자재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6. 야간대관의 경우 대관자는 기념관 1층 출입 관객 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7. 대관 시 발생 되는 폐기물은 대관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8. 공연장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② 대관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3. 대관기간 중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유의
4. 기타 관장이 정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유의

제12조(공연장 사용 시간 등) ①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시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념관은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2. 공연장 대관 가능일은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이며 일요일과 휴관일은 대관이 불가하다.
3. 공연장은 1일 1대관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4. 공연장 대관 시설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관목적에 따라 18시 이후 야간대관이 승인된 경우에는 기념관 보안 관리를 위하여 21:00 이전에 퇴실하여야 한다.

제13조(반입 금지 물품 등) ① 기념관은 산업안전보건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어린이안전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반입된 물품을 강제 반출 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은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인화성 물질(휘발유, 시너, 가스 등)과 담뱃불, 성냥,ライター, 촛불, 화약류 등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기념관은 밀가루, 모래, 흙 등 분진 및 먼지에 의한 기계 오작동 유발 품목 등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물 등 액체류 사용으로 인한 하부기계 오작동 또는 주변 기기 장애가 발생 가능한 품목 등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기념관은 「공연법」 제11조의5에 따라 화재 등 재해나 위급사항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객석을 운용하며, 대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 공연장으로 등록된 객석수를 초과하여 보조석 등을 운용할 수 없다.

2. 단, 작품의 특성상 개축 객석을 사용해야 할 경우, 기념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사전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14조(홍보, 자료제출, 작품 촬영, 녹화, 방송, 판촉 등) ①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한 포스터, 전단, 프로그램 등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이전에 그 내용과 표현에 대해 반드시 기념관과 협의 후 제작 및 발행, 부착, 배포하여야 하며, 기념관이 규정하는 로고 및 BI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자는 기념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 설치하여 발생하는 민원,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대관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료(포스터, 팸플렛, 리플렛, 대본, 보도자료,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를 기념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기념관의 자료로 활용되는 데 동의한다.

④ 기념관은 제 ③항의 자료에 대해 대관자의 저작권적 권리를 인정하며 보존 및 열람, 홍보, 전시, 교육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대관자가 공연하고자 하는 대관자의 저작물의 내용과 홍보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도 전액 대관자가 부담한다.

⑥ 공연의 촬영, 녹화, 방영권은 대관자에게 귀속된다. 단, 기념관은 홍보, 교육이나 자료용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공연을 촬영, 또는 방영할 수 있다.

⑦ 대관자는 공연의 중계 및 실황 녹화를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사전에 기념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5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전태일기념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지 제1호】 대관 시설 사용자 유의사항

대관 시설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시는 기념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무대장비인 영상·조명·음향장치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대장비 담당 직원과 사전 협의 후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기념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시설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화재예방 등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념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업무처리 계통도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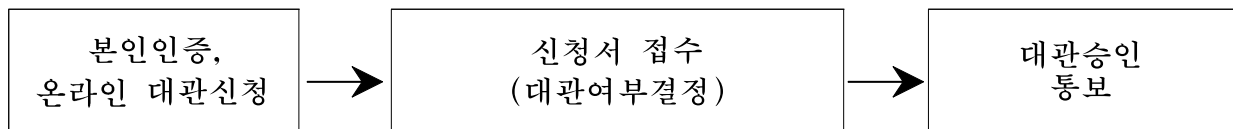
<공연장 운영 부서>

<공연장 운영 부서>

사업기획팀 운영관리팀

대관일정 및 무대장비 사용 시
내용검토, 승인 사전협의 및
안전 사항 확인

관리자 승인



※ 업무분장안내 : 대관일정 관리 및 내용검토, 승인(사업기획팀)
조명·음향 등 무대장비의 사용 협의(운영관리팀)

【별지 제2호】 무대장비 사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 구 분 | 내 용 |
|-------------|---|
| 무대 | ·무대부 등의 구조물 설치 시 적재하중의 적정성 협의 ·시설물 마감재 사전 보강 등 |
| 음향·조명·영상 장비 | ·대관 시의 장비 설치 등에 대한 협의 |
| 전기 설치 | ·초과 전기량 사용 시 대한 협의 |
| 안전 및 피난요령 | ·대관 준비 시 또는 행사 시 안전관리 사항 ·재난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및 대피장소(피난동선) ·소방기구 배치 장소 및 사용 요령 등 |
| 공연장 청소 | ·쓰레기 처리 방안 및 쓰레기통 사용 등 |
| 기타 | ·기타 운영관리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